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. (제 회)	

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안규백 (국방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 .

법제처 심사 전

## 1. 의결주문

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 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방부에 국방 분야 인공지능·첨단기술의 개발 및 활용체계 구축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차관보를 신설하는 등 「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가 개정된 것에 맞추어,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일부 변경하려는 것임.

## 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생 략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6. 1. 14. ~ 1. 26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

음

대통령령 제 호

##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1항제1호 중 “전력정책국장”을 “차관보”로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3조(위원회의 구성 등) ① 법 제9조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 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국방부 <u>전력정책국장</u></p> <p>2. ~ 4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13조(위원회의 구성 등) ① 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<u>차관보</u></p> <p>2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방부 전력정책과	
연 락 처	(02) 748 - 5674